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남범우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이옥규의원 등 9인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년 4월 13일

○ 회부일자 : 2021년 4월 16일

3. 제안이유

○ 공동주택의 거주 수요가 높아지며 전문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이 기존 「주택법」에서 분리 제정('16. 8. 12.시행)되었으며, 세분화되고 구체화된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강화하고자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대상 정비(안 제4조)

○ 공용시설물 관리비용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 정비(안 제5조)

○ 모범관리단지 선정(안 제6조)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도지사는 주거종합계획 수립, 주거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주거 정책과 도의 주요 정책을 연계하도록 하였으며
-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안 제4조)과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안 제5조),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안 제6조)임.
- 이 조례안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입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안전을 위해 관리비용을 지원하여 도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을 할 경우에도 지원을 확대하여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에 대한 갑질행위 등을 근절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끝.